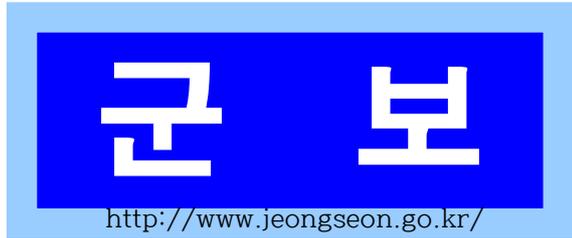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64호 2012. 4. 4. (수)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21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 정선군공고 제2012-219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정선군공고 제2012-224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공고 제2012~232호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정선군공고 제2012-241호 2012년도 제안제도 모집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2-242호 2012년 정선군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2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210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3월 20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보건진료원(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추가 정원 확보, 가축질병 방역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568명(증 1명)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분 청 : 268명(현행과 같음)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4명(현행과 같음)
  - 읍 면 : 179명(증 1명)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별정직
    - ① 보건진료6급 증2명, 보건진료7급 증4명, 보건진료8급 증4,  
↔ 별정6급 △10명
    - ② 사회복지7급 증1명 ↔ 사회복지9급 △1명

- ③ 사회복지9급 증1명 ↔ 행정9급 △1명
- ④ 농업9급 순증 1명
  - 연구지도직 : 농업연구사 증2명↔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2명
  - 기능직 : 기능 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 기능9급 증32명 ↔ 기능10급 △32명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4월0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560-2590)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기존 기능10급은 2012.5.23.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되, 2012.5.24.부터는 기능10급을 폐지한다.

②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b>총 계</b>	<b>568</b>	<b>268</b>	<b>11</b>	<b>86</b>	<b>24</b>	<b>87</b>	<b>92</b>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직직 계	451	221	6	62	17	67	78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3	10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0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3	67	3	11	5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0					
행정·농업	8	2				1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1			1			
농업·지도사	2			2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2			2			
<b>7급 소계</b>	<b>146</b>	<b>74</b>	<b>1</b>	<b>22</b>	<b>6</b>	<b>19</b>	<b>24</b>
행정	47	25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6	3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4			2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b>8급 소계</b>	<b>106</b>	<b>44</b>	<b>0</b>	<b>22</b>	<b>4</b>	<b>18</b>	<b>18</b>
행정	28	14			0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2	2					0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9급 소계	49	23	0	5	1	9	11
행정	11	4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1	5				2	4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3	2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연구사 소계	4	2	0	2			
학예연구·별정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17	3	0	14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5	3	0	12			
농촌지도사	14	3		11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0	0	2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93	41	5	6	7	20	14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급 소계	15	11	0	1	2	1	0
토목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1	0			1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3	2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b>8급 소계</b>	<b>11</b>	<b>3</b>	<b>1</b>	<b>0</b>	<b>2</b>	<b>5</b>	<b>0</b>
I	토목	1	0			1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영사	1	1					
	운전	4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b>9급 소계</b>	<b>63</b>	<b>24</b>	<b>4</b>	<b>5</b>	<b>2</b>	<b>14</b>	<b>14</b>
II	토목	4	4					
	전화상담	1	1					
	통신	0						
	전기	2	1			1		
	기계	6					2	4
	열관리	1	1					
	운전	18	4	1	4		4	5
	필기	9	6		1	1	1	
	워드	2		2				
	전산	1	1					
	조무	18	5	1			7	5
	통신·전기	1	1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 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219호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2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2. 개정취지

「폐기물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방법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개정
  - ‘청소비’를 ‘수수료’로 변경
  - 수수료 등의 징수방법 및 이용요금 개선
- 나. 마을관리휴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전화 033-560-2368 FAX 033-560-2593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안 1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 등(이하 "마을관리휴양지"라 한다)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관리휴양지"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정선군 또는 마을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란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마을관리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⑤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①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요금표에 따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 ③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2. 당해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정선군민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 2. 기타 정선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병 질환자
-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 5.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설이용료 요금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령	구 분	이 용 료	
		(당일)	(체류)
주 차 장	이륜차	500	1,000
	승용차	2,000	4,000
	대형차	4,000	8,000
야 영 장	노 지	6,000	
	데 크	10,000	

정선군 공고 제 2012- 224 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정 선 군 수

**1. 제정취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 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포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함 으로서 주민의 제보 활성화를 통하여 운수사업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및 포상 내용과 금액을 정함(안 제 2조)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25만원
-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 행위 25만원
- 자가용자동차 등 의 노선운행 행위 10만원
- 화물자동차(콜벤) 여객운송 행위 10만원
- 타지역 택시 불법행위 5만원
-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나. 신고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 포상금의 지급 방법,시기 등을 정함(안 제6조)

- 신고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우편번호 233-701)
  - FAX : 033-560-2174
  - 문의 : 033-560-2364

붙임 :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 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2.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행위
- 3.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송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 4. 화물자동차(콜밴) 여객운송행위
- 5. 타 지역택시 불법행위
- 6.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25만원
- 2. 대여자동차(렌트카) 유상운송 영업행위 : 25만원
- 3.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 10만원
- 4. 화물자동차(콜밴) 여객운송 사업행위 : 10만원
- 5. 타 지역택시 불법 행위 : 5만원
- 6. 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 5만원

제3조(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시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이상) 또는 정선군의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2조 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위반행위가 있는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벌금, 과태료, 과징금 이상)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232호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없음

2. 개정이유

-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군민의 날을 지난 1983년 7월 4일 조례 제849호에 의거 매년 10월 1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04년부터 정선아리랑제 행사와 정선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체육대회 행사가 각각 분리되어 개최되고 있음.

- 정선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군민체육 대회 행사가 매년 6월에 개최 되므로 이 시기에 맞추어 정선군민의 날을 개정하여

군민체육 대회시 정선군 향토민상 수상,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등 명예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군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

※ 그동안 군민의 날 개정을 위해 사전 2012.1.16.~2.20까지 아라리 사람들, 군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읍면 기관사회단체회의, 이장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 하였음.

3. 개정 주요내용

-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를  
군민의 날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로 개정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560-2232, 팩스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 임 : 1. 정선군군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민의날(이하 “군민의날”이라 한다.)의”를 “군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군민의날)”을 “(군민의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중 “10월”을 “6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u>군민의날</u>(이하 “<u>군민의 날</u>”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u>군민의날</u>)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p>	<p><u>정선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u>군민의 날</u> ----- ----- -----.</p> <p>제2조(<u>군민의 날</u>) ----- 6월 ----- -----.</p>

정선군공고 제2012-241호

### 2012년도 제안제도 모집 공고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제1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우수한 의견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3월 일

정 선 군 수

#### 1. 관련규정

-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동 시행규칙

#### 2. 공모기간 : 2012.3. ~ 2012.11.30

#### 3. 제안자격 : 전 국민(외국인 포함)

#### 4.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자유로이 과제 선정

- (1) 군민의 생활편익을 꾀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3) 시책의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고안
-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방안

##### 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1)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한 제안
- (3)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4)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5)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 (6) 연구비 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7) 사기업체의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등

## 5. 응모방법 : 인터넷, E-mail, 우편 등

### 가. 구비서류

- (1) 제안서 1부, 제안설명서 1부 제출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나. 제안서 작성요령

- (1) 제안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2) 제안의 제목, 개요 및 기대효과

\*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는 제안심사 제외

### 나. 접 수

- (1)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정선군홈페이지([www.jeongseon.go.kr](http://www.jeongseon.go.kr))
 군민참여공간(상상플러스)
- (2) E-mail : tan00@korea.kr
- (3) Fax : (033) 560-2592
- (4) 우 편 :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앞(033-560-2125)

## 6. 제안심사

### 가. 심사안건 : 2012. 11. 30일까지 접수분

\* 접수기간 이후에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 나. 심사횟수 : 반기별 심사

### 다.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 라. 심사방법

- (1) 1차 심의(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및 실무심의)
- (2) 2차 심의(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창안결정
- (3) 3차 심의(제안심사위원회 심의) : 창안등급결정

### 마. 결과통보 : 접수 후 1개월 이내

## 7. 시상 및 특전

### 가. 시상시기 : 2012년 연말

### 나. 창안등급 및 부상금

- (1) 금 상 : 1창안당 1,000만원

(2) 은 상 : 1창안당 700만원

(3) 동 상 : 1창안당 400만원

(4) 장려상 : 1창안당 100만원

(5) 노력상 : 1창안당 2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응모된 제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창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2-242호

### 2012년 정선군지방공무원 제안모집 공고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안모집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일  
정 선 군 수

#### 1. 제안관장기관 : 정 선 군

#### 2. 제안의 종류

가. 자유제안 : 제안자가 과제를 임의로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

나. 지정제안 : 군수가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 지방행정제도 개선방안
-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방안
-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 조성 마련 방안
-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방안
- 관광지 개발과 연계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
- 주민편익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방안
- 인센티브제를 통한 행정의 선의경쟁 유도 방안

다. 직무제안

- 직무수행과정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 공로를 인정 읍면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

#### 3. 제안의 자격과 방법

가. 제안의 자격 : 정선군 산하 전 공무원

나. 제안의 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

- 반드시 국민신문고내 **공무원제안관리시스템** 접속(<https://gov.epeople.go.kr:8055>) 응모

#### 4. 제안의 모집

가. 모집기간 : 연중(2012. 11. 30.까지)

- ※ 12월 접수된 제안은 익년도 심사

나. 문의처

- 군청 기획감사실(☎560-2125)

5. 제출서류 : 필요시 공무원제안 관리시스템 첨부

-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추천의견서(직무제안에 한함)
- 참고서류(설계도면, 사진 등)

6. 창안자에 대한 시상 및 특전

가. 시상시기 : 2012. 12. 31(종무식시)

나. 인사상 특전

- 특별상 : 특별승급
- 우수상·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다. 시상금

- 특별상 : 시상금 30만원
- 우수상 : 시상금 20만원
- 우량상 : 시상금 10만원

7. 창안의 권리승계

- 채택된 제안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출원 및 등록권리는 정선군이 승계함

8. 기 타

- 제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560-2125)로 문의